# 『미국,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 상설 규정 통지』

2026. 04. 02.

| | | | |
|---|---|---|---|
| TBT 통보여부 | 통보 | HS Code | 3923 |
| 통보국 | 미국 |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 381,628 (2025) |
| 작성기관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문의처 | tbt@kotica.or.kr |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BT 종합지원센터 R&I Cente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단일 사용(Single-use) 포장재 및 식기류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 포털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 식품·농산물 포장재의 규제 제외 신청 시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로도 타 법령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

○ **(적용범위)** HS 코드 - 3923*

* HS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주요 내용

○ **(행정 서류 및 신청서의 전자 제출(온라인 포털) 의무화)** 기존의 모호했던 제출 방식이 구체화되어, 모든 규제 관련 서류 제출 창구가 일원화

○ **(농식품 포장재의 예외(제외) 요건 및 절차 강화)** 농식품 포장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대체 불가능성' 요건 강화

○ **(건강 및 안전 목적의 예외 신청 입증 기준 구체화)** 건강 및 안전 문제나 '재활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물질(Unsafe to recycle)'임을 사유로 예외를 신청할 때, 막연한 우려가 아닌 구체적인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증명하도록 기준 고도화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럽)**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따라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설계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 5% 감축을 목표로 하며, 재활용 성능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에코 모듈레이션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및 택배 포장 표준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026년부터는 PET 및 PE 용기의 재활용 설계 지침(GB/T)이 본격 발효되며, 배달 및 전자상거래 업종을 중심으로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을 높이는 국가 표준 체계를 구축 중

○ **(일본)** 2022년 시행된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기반으로 제품

전 생애주기 관리를 실시합니다. 2026년부터 주요 기업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며, '3R+Renewable'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한 플라스틱 일괄 수거 및 고도화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행정 절차의 온라인 포털 제출 의무화 및 식품 포장재 제외 요건 강화로 기업 부담 증대. 설계 변경 불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180일 후 규제 대상으로 강제 전환됨.

○ **(권고사항)** CalRecycle 온라인 포털 기반의 등록·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 포장재 제외를 위해 대안 설계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R&D 데이터 및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행정 부담)** 기존 이메일 방식에서 온라인 포털 제출로의 전면 전환은 기업의 행정 시스템 개편과 전담 인력 운용의 부담을 초래 가능

○ **(시장 접근)** 단순 법적 충돌 주장을 넘어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로도 대안 설계가 불가능함을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증빙해야하는 부담 발생

○ **(공급망 관리)** 생산자 책임(EPR) 이행을 위해 제품 구성 성분과 재활용 데이터를 부품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등 공급망 관리 난이도 상승

## □ 대응 방안

○ 전담자 지정 및 포털 계정 생성으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설계 변경 불가 입증용 R&D 보고서를 선제 확보하고, 오류 통지 시 14일 내 수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필요

# 목 차


요약문 ..... 1

Ⅰ. 규제 개요 ..... 2

Ⅱ. 규제 세부 내용 ..... 3

Ⅲ. 관련 적합성 평가 정보 ..... 5

Ⅳ.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7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7

2.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 9

Ⅴ.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0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10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2

Ⅵ. 대응 방안 ..... 13

참고 1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4

# 요 약 문

| | | | | |
|---|---|---|---|---|
| 규제명 | 영문 | Notice of SB 54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Permanent Regulations | | |
| | 국문 |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 상설 규정 통지 | | |
| WTO/TBT 통보문 번호 | | USA/2088/REV.1/ADD.1 | 통보국 | 미국 |
| 채택(예정)일 | | - | 시행현황 | 개정 초안 |
| 시행(예정)일 | | - | 통보일(고시일) | 2026. 02. 02. |
| HS Code | | 3923 | 의견수렴 마감일 | 2026. 02. 13. |
| 총 수출액 (천불) | | 1,573,413 천불 (2025 기준) |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381,628 천불 (2025 기준) |
| 중소기업 품목여부 | | 미대상 | | |
| 규제 주요 내용 | 해당 부처 |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자원회수재활용국 | | |
| | 규제 목적 | (캘리포니아 주)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해 행정을 포털로 전환하고, 식품 포장재 제외 시 설계 변경 불가능성을 입증토록 해 순환경제를 강화 | | |
|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주)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 포털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 식품·농산물 포장재의 규제 제외 신청 시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로도 타 법령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 | | |
|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 | 이번 미국(캘리포니아 주) 개정안은 예외 기준 엄격화와 온라인 행정 전환으로 기업의 행정 및 공급망 관리 부담 증가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 |
| 대응 여부 | 예상 기업 애로 | 온라인 포털 도입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예외 인정을 위한 정밀한 기술적 입증이 요구되며, EPR 이행을 위해 부품 단위의 데이터 관리가 필수화되면서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 난이도 상승 | | |
| | 대응 방안 | 전담자 지정 및 포털 계정 생성으로 데이터 디지털화 및, 설계 변경 불가 입증용 R&D 보고서를 선제 확보하고, 오류 통지 시 14일 내 수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필요 | | |

# 1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단일 사용(Single-use) 포장재 및 식기류 관련 행정절차는 온라인 포털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 포장재 등의 예외 요건을 강화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만 면제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안 마련

## □ 규제 요지

○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단일 사용(Single-use) 포장재 및 식기류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 포털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 식품·농산물 포장재의 규제 제외 신청 시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로도 타 법령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

## □ 적용대상

○ (HS 코드: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 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시행일

○ 현재 미정

## 2 규제 세부 내용

### □ 적용제품

○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단일 사용(Single-use) 포장재 및 식기류

- 포장 및 운반 용기(HS 코드: 3923)에 해당하는 제품 중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상자, 케이스, 가방, 자루 등), 플라스틱 소재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Food Service Ware)로 트레이, 접시, 볼(bowl), 컵, 조리도구, 스트로우, 힌지형 컨테이너 등
- 퇴비화 가능 표시 제품으로 제품에 “compostable“(퇴비화 가능) 또는 “home compostable“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되는 모든 제품

### □ 규제 준수 대상

○ 동 규제안은 캘리포니아 내 적용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거나 상표권을 소유한 모든 생산자에게 규제 준수 의무 적용

### □ 세부내용

○ **(행정 서류 및 신청서의 전자 제출(온라인 포털) 의무화)** 기존의 모호했던 제출 방식이 구체화되어, 모든 규제 관련 서류 제출 창구가 일원화

- 규제 면제 신청, 생산자 등록, 소규모 생산자 면제 신청, 생산자 책임기구(PRO) 계획서 및 연례 보고서 등 모든 주요 행정 서류는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수국(CalRecycle)에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CalRecycle이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제출용 ’온라인 포털’의 사용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공지한 경우에는, 이메일 대신 반드시 해당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만 전자 제출

○ **(농식품 포장재의 예외(제외) 요건 및 절차 강화)** 농식품 포장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대체 불가능성' 요건 강화

- 미국 농무부(USDA) 또는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미생물 오염 방지' 또는 '포장재의 안전성 및 구조적 무결성 유지'를 위한 의무적인 연방 규정, 규칙 또는 지침과 본 캘리포니아 규제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예외를 신청하는 기업은 규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가 모두 참임을 입증해야 함

* 1. 안전 및 무결성에 대한 의무 기준을 충족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2. 문제가 되는 특정 포장 구성 요소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연방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음
3. 포장재 전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도 연방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음

○ **(건강 및 안전 목적의 예외 신청 입증 기준 구체화)** 건강 및 안전 문제나 '재활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물질(Unsafe to recycle)'임을 사유로 예외를 신청할 때, 막연한 우려가 아닌 구체적인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증명하도록 기준 고도화

- 환경, 보건 및 안전, 그리고 작업자의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설명해야 하며, 재활용 과정이 독성 및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 최종 시장, 처리업체 및 중간 공급망의 장비를 오염시킬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입증해야 함
- 해당 포장재를 무리하게 재활용할 경우, 소비자를 독성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제조될 위험성이 있는지도 분석하여 제출해야 함

## 3 관련 적합성 평가 정보

### □ 적합성 평가 개요

○ “퇴비화 가능“이라고 표기된 플라스틱 및 포장재가 실제 유기농 퇴비로 분해되도록 보장하고, 분해 과정에서 토양이나 농업 시스템을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

### □ 적합성 평가 대상

○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비화 가능(Compostable)“ 또는 “가정용 퇴비화 가능(Home compostable)“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대상으로 함

### □ 적합성평가 절차

○ **(인증 준비)** 포장재가 퇴비화 기술 표준(ASTM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ISO/IEC 17025:2017 인가를 받은 독립적인 연구소에 제품 테스트를 의뢰 및 결과 확보

○ **(인증 신청)** 테스트 결과와 제품의 성분(발암물질 등 0.1% 이하 기준 충족 여부 등)과 함께 인증 신청

○ **(인증 심사)**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퇴비화 가능 및 독성 기준 부합 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인증을 발급

○ **(라벨링)** 제품 외관에 “Compostable(퇴비화 가능)“ 또는 “Home Compostable(가정용 퇴비화 가능)“이라는 단어와 함께, 승인된 제3자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녹색이나 갈색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

○ **(사후관리)** 제조사 및 공급업체는 자사 제품의 인증 요건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요청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문서를 제출해야 함

## □ 위반 시 행정조치

ㅇ 규정을 위반하여 마케팅하거나 부적절한 라벨을 사용할 경우, 1차 적발 시 500달러, 2차 1,000달러, 3차 및 그 이후에는 2,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

#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유럽연합(EU)

○ **(현행 규정)**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94/62/EC)'을 대체하는 신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025/40)'이 2025년 2월 발효되어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도입동향)**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며,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2026년부터는 포장재의 재활용 성능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에코 모듈레이션(Eco-modulation)'이 강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전자상거래 및 물류 포장에 대한 빈 공간 비율 제한(최대 40%), 소포장 소스류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사용 금지가 추진 예정

### 2 중국

○ **(현행 규정)** 2026년 1월 국무원과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업데이트된 고체 폐기물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포장재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강화되고, 2026년 2월부터는 PET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PE-HD) 포장재의 재활용 설계를 규정하는 국가 표준(GB/T 46020.1~2-2025)이 발효 됨

○ **(도입동향)** 소매,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업종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금지 및 재활용 소재 우선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생산자와 브랜드 소유자는 제품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규칙이 적용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2026년 5월부터 가전제품 내 재생 플라스틱 및 재생 금속 사용에 관한 국가 표준(GB/T 46730-2025)이 시행되는 등 포장재 외 품목에서도 재생 원료 사용을 장려하며, 2025년부터는 택배 포장에 대한 친환경 표준이 의무화 예정

## 3 일본

○ **(현행 규정)** 2022년 4월 시행된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대하여 제품 제조 시 '3R+Renewable'(감량, 재사용, 재활용 + 재생가능 소재) 원칙 준수 관리를 실시

○ **(도입동향)** 2026년부터 특정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해 재생 플라스틱 사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소매업체와 서비스 제공자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유료화나 포인트 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지방 자치 단체가 플라스틱 용기 포장 뿐 만 아니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까지 일괄 수거·재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디지털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 함량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 보고 체계를 구축 중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구분 | 미국 (캘리포니아 개정안) | 유럽연합 (EU) | 중국 | 일본 |
|---|---|---|---|---|
| **근거법령 (최상위법)** |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 AB 1201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2025/40) |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법 (2026 업데이트) |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2022) |
| **규제부처** |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 산하 자원회수재활용국(CalRecycle) | 유럽위원회(EC) 및 각 회원국 집행기구 | 국무원 및 생태환경부(MEE) | 경제산업성(METI) 및 환경성(MOE) |
| **적용대상** | 단일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 및 식기류, HS 3923 포함 물품운반·포장 용기, 뚜껑·마개류 등 | EU 시장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전반 | 소매·전자상거래·배달 포장재, PET 및 PE-HD 용기 등 | 12종 특정 플라스틱 제품(식기류 등) 및 플라스틱 용기 포장 |
| **주요내용** |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도입 , 65~70% 이상의 재활용률 목표 달성 , 퇴비화 표시 제품의 제3자 인증 의무화 | 2030년 모든 포장재 재활용 설계 의무화, 포장재 내 재생 원료 함량 기준 설정,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과대포장 금지, PET/PE-HD 재활용 설계 표준(GB/T) 준수, 가전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장려 | '3R+Renewable' 원칙 기반 설계 지침 준수, 기업별 플라스틱 감축 계획 보고, 지자체 일괄 수거 체계 구축 |
| **위반 시 행정조치** | 행정 민사 벌금 (위반 당 최대 $50,000 부과) , PRO 승인 취소 , 시정 명령(Corrective Action Plan) | 회원국별 벌금 부과, 시장 출시 제한 및 제품 회수 명령 | 시정명령, 벌금 부과, 생산 및 영업정지 처분 | 지도 및 권고, 미이행 시 기업명 공표, 특정 조항 위반 시 벌금 |
| **제출서류 / 인증요건** | PRO 계획서 , 출처 감소 기준 보고서 , 제3자 기술 인증서(ISO/IEC 17065) | 재활용성 등급(A~E) 증빙, 재생 원료 함량 적합성 선언(DoC) | 국가 표준(GB) 부합성 증빙, 적합성 선언 및 추적성 문서 | 특정 플라스틱 감량 실적 보고서, 친환경 설계 인증서(자율) |
| **규제 특징** | 에코 모듈레이션(수수료 차등) 기반의 강력한 경제적 유인 제공, 허위 환경 주장(그린워싱) 방지에 집중 |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하여 강력한 통합 관리, PFAS 함유 금지 등 안전 규제 병행 | 국가 표준 시스템(GB/T)을 통한 수직적 관리, 전자상거래 및 배달 시장 특화 규제 도입 | 기업의 자발적 감축과 지자체 수거 시스템 간의 연계 강조, 디지털 추적성 구축 추진 |
| **핵심 기한 (Target)** | 2026. 07. 01. 기준 보고서 제출, 2027. 01. 01. 전면 시행 목표 | 2026. 08. 12. PPWR 본격 시행, 2030년 모든 포장재 재활용 가능 설계 | 2026년 PET 등 주요 재질 국가 표준 시행, 2025년 택배 포장 친환경 의무화 | 2026년 재생 플라스틱 사용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

# 5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ㅇ 규제 개요

| 항목 | 내용 |
|---|---|
| 규정명 | Notice of SB 54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Permanent Regulations |
| 관리기관 |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br>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자원회수재활용국 |
| 법적근거 | 상원 법안 제54호 (Senate Bill 54, SB 54)<br>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
| 통보문서 | USA/2088/REV.1/ADD.1 |
| 주요목적 |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생산자 책임법(SB 54)의 실질적인 이행 절차와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퇴비화 가능' 제품의 제3자 인증 필수 기준(AB 1201)을 확립하기 위함 |

### ㅇ 주요 요구사항

| 요구사항 | 검토결과 |
|---|---|
| 생산자 등록 및 이행 체계 참여 | 캘리포니아 내 모든 생산자는 규정 시행 후 30일 이내(또는 2027년 이전)에 자원회수재활용국(CalRecycle)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 책임 기구(PRO)에 가입하거나 독립 생산자로서 개별 준수 승인을 받아야 함 |
| 데이터 보고 및 기록 관리 | 모든 보고 엔티티는 2026년 7월 1일까지 2023년 기준 데이터를 포함한 출처 감소 기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전년도 판매, 재활용 및 폐기 실적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함 |
| 재활용률 달성 목표 | 특정 면제 대상을 제외한 대상 제품군(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소 65%, 2027년부터는 70% 이상의 연간 재활용률을 유지해야 함 |
| 에코 모듈레이션 수수료 납부 | 생산자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및 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차등 설계된 수수료를 PRO에 지불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 포함 시 할증 수수료(Malus fee)가 부과되고 재생 가능 재료 사용 시 크레딧 혜택이 부여됨 |
| 퇴비화 가능 표시 인증 (AB 1201) | "퇴비화 가능(compostable)"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되는 제품은 반드시 CalRecycle이 승인한 제3자 인증 기관(ISO/IEC 17065 인증 보유)으로부터 기술 표준 준수 인증을 획득해야 함 |

| | |
|---|---|
| 행정 벌칙 및 시정 조치 | 규정 미준수 시 위반 사항 및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서의 승인을 통해 시정 계획서(Corrective Action Plan)를 제출하여 위반 사항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 ○ 평가 항목별 분석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필요성 | 초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온라인 포털)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됨 |
| 비차별성 | 모든 보고 및 신청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단일화되어 국내외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
| 최소무역 제한성 | 식품 및 농산물 포장재 제외 신청 시 '타 법령과의 충돌 증빙' 요건이 대폭 구체화되어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규제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됨 |
| 투명성 | 제외 대상 판정 결과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15일간의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된 규정 문구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 |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구분 | 애로유형 및 파급효과 | 구체적 발생 원인 | 영향경로 |
|---|---|---|---|
| 행정·운영 | 신규 보고 시스템(Portal) 적응 부담 | 기존 이메일 방식에서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전자 제출로 모든 행정 절차(등록, 보고, 예외 신청)가 의무화됨 | 기업 내 IT 대응 체계 부재 시 등록 지연 발생 → 시스템 입력 오류 시 14일 이내 수정 의무 등 실시간 모니터링 부담 가중 |
| 시장 접근 및 수출 | 제외 신청(Exclusion) 요건 강화 | 식품·농축산물 포장재 제외 신청 시, 설계 변경이나 구성 요소 교체로도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함 | 단순 제외 신청 불가 → 기술적·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정밀 보고서 작성 필요 → 서류 미비 시 180일 후 즉시 규제 대상(Covered Material)으로 전환 |

ㅇ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영향)** 모든 행정 절차의 '온라인 포털(Online Portal) 제출 의무화'와 식품·농산물 포장재의 '제외 신청 요건 강화' 및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단순히 법적 충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전체 패키징 재설계나 구성 요소 교체로도 대안 마련이 불가능함"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180일 후 규제 대상으로 강제 전환됨에 따라 기업에 정밀한 기술 검토와 포털 시스템 대응의 부담 발생
- **(권고사항)** 우리 기업은 기존 이메일 방식이 아닌 CalRecycle이 지정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한 등록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식품 포장재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대안 설계의 기술적·경제적 불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R&D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 필요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ㅇ 주로 행정적 절차의 구체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무역 규범인 TBT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연번 | 무역기술장벽 유형 | 위반사항 |
|---|---|---|
| 1 |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 해당사항 없음 |
| 2 |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해당사항 없음 |
| 3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해당사항 없음 |
| 4 |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 해당사항 없음 |
| 5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해당사항 없음 |
| 6 |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 7 |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 해당사항 없음 |
| 8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 해당사항 없음 |

# 6 대응 방안

## □ 대응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구분 | 대응 핵심 | 대응 방안 |
|---|---|---|
| 중소기업 | • 포털 중심 행정 대응 | • 기업 내 전담자를 지정하여 포털 계정을 조기에 생성하고, 모든 등록·보고·신청 데이터를 전자 양식에 맞춰 사전 디지털화 필요 |
| 중견기업 | • 제외 신청 기술 증빙 | • 단순히 법적 충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성 요소 교체나 전체 설계 변경으로도 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R&D 기술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준비 |
| 대기업 | • 단기 기한 및 오류 관리 | • 포털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에 수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필요 |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KnowTBT 포털(knowtbt.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KnowTBT 포털(knowtbt.kr)의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 포털(Knowtbt.kr) 접속 → 상담신청)

# 참고 1 규제원문(전문) 번역본(발췌)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 문서는 주요 개정 사항 위주의 자료로 세부사항은 규제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규정 본문**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규정 순환경제국

캘리포니아 자원부 재활용 및 복구 규정

참고:

원래 제안된 규제 문서에 대한 15일 변경 제안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최소 45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 원래 제안된 규제 문서인 45일 변경 사항은 이 공지에 의해 공개되지 않으므로 평범하고 깨끗한 텍스트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지에서 공개되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15일 변경 사항은 추가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밑줄, 삭제된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밑줄로 표시됩니다.

제14편

디비전 7

**채택**

11.1장.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포장 생산자 책임 제1조-14

**18980.1, 18980.1.1, 18980.2, 18980.2.1, 18980.2.2, 18980.2.3조를 채택한다, 18980.2.4,**

**18980.2.5, 18980.2.6, 18980.2.7, 18980.3, 18980.3.1, 18980.3.2, 18980.3.3, 18980.3.4, 18980.3.5, 18980.4, 18980.4.1, 18980.4.2, 18980.4.3, 18980.5, 18980.5.1, 18980.5.2, 18980.6, 18980.6.1, 18980.6.2, 18980.6.3, 18980.6.4, 18980.6.5, 18980.6.6, 18980.6.7, 18980.6.8, 18980.7, 18980.7.1, 18980.7.2, 18980.7.3, 18980.7.4, 18980.7.5, 18980.7.6, 18980.7.7, 18980.8, 18980.8.1, 18980.8.2, 18980.9,**

DRAFT

**18980.9.1, 18980.10, 18980.10.1, 18980.10.2, 18980.11, 18980.11.1, 18980.11.2, 18980.12, 18980.13, 18980.13.1, 18980.13.2, 18980.13.3, 18980.13.4, 18980.13.5, 그리고 18980.1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11.5장. 환경 마케팅 및 라벨링

**캘리포니아 규정 제14편 18981조 채택**

**제11.1장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포장 생산자 책임 제1조: 정의**

**18980.1조. 정의**

(하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정의들은 이 장의 조항과 공공자원법 제3부(섹션 42041부부터) 3부, 30분에 명시된 정의와 함께 적용됩니다:

(일) "법"이란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공공자원법 제30부 3부 3장(42040조부터 42084조까지)을 의미합니다.

(이) "대체 수거"란 포함 물질이 폐기되었거나 고형 폐기물로 간주되는지, 수거 방식과 장소와 관계없이 포함 물질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공공자원법 42041조 (g)항에 정의된 "커브사이드 수거"가 아니며, 이는 지방 관할구역이나 지역 관할구역과 계약한 재활용 및 퇴비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 "혐기성 소화"란 산소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물질을 통제된 생물학적 분해를 의미합니다. 혐기성 소화는 바이오가스와 잔류 소화물을 생성합니다.

DRAFT

**제2조: 보장 물질 및 보장 대상 품목 섹션 18980.2. 범주적으로 제외된 자료**

(하나) 다음은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입니다:

(일) 포장 및 기타 품목은 공공자원법 42041조 (e) 하위항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자원법 (b) 하위항 (1) 및 (2) 항 및 42060조 (d)에 따라, 식품 또는 농산물(출처에 관계없이 )에 사용되는 포장 또는 포장 부품은 법을 준수하고 의무 적으로 적용하는 다른 포장 또는 포장 부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미국 농무부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행한 규정, 규칙 또는 지침. 이 문단에 따른 제외 결정은 -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가금류 제품 검사법, 연방육류 검사법, 계란제품 검사법에 따른 미생물 오염 방지 또는 포장재의 안전성 또는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적용되는 의무 식품 또는 농업 규정, 규칙 또는 지침.

(하나) 포장 또는 포장 부품이 ~~(a)~~의 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모든 기관은~~ 이메일로 부서 에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사용 가능 통지를 게시한 경우, 이 하위항에 요구되는 통지는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포장 ~~또는 포장 부품과 관련 제품에 대한 명세와 그 결정 근거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DRAFT

(둘) 공지근거는 챕 터법의 모든 구체적 조항과 충돌을 일으키 는 의무 사항을 명시 하고, 상포되는 연방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을 인용 하며, 제외할 모든 포장 및 포장 부품과 관련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 포장이나 포장 부품의 왜 없는지 설명하세요. 다음 모든 조건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대안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 포장의 안전성과 구조적 무결성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의무적 기준을 충족하고, 새로운 불가피한 법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지에 명시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체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 포장을 완전히 재설계하거나 교체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통지를 받은 후, 부서는 해당 통지가 식품 또는 농산물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며, 하위항 (B)에 설명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부서가 통지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인용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통지 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가 불완전하며 (A) 및 (B)항에 따라 재제출이 필요함을 통지해야 한다.

(넷) 부서는 웹사이트에 각 결정완료 통지의 포장 또는 포장 부품 및 관련 제품을 식별하는 공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짜, 법인명, 포장 및 관련 제품의 명세 서, 그리고 기타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부서의 통지 서 ~~검토~~. 데이터베이스에 식별된 포장재 또는 포장 부품은, 부처가 (E)항에 따라 통지 및 해당 하위항에 따라 제출된 추가 정보가 제외 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 물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E)~~(B)~~ 언제든 부서는 해당 기관의 결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6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서가 해당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지하며, 기관은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기관 및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및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등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과의 추가 협의 를 거친 후, 부서는 통지서와 추가 정보가 각각의 포장 또는 포장 부품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부서가 통지서 및 추가 정보가 통지에 명시된 특정 포장 또는 포장 부품 이 ~~제외 대상~~이 아니 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이메일로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당 포장재 또는 포장 부품은 ~~해당 통지~~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용 대상 자재로 간주~~됩니다~~.

(F) 기관이 (E)항에 명시된 180일 기간 동안 또는 이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포장 또는 포장 부품에 대해 통지를 제출하면, 해당 포장재 또는 포장 부품은 부가 해당 통지와 추가 정보를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 재료로 간주되며, 데이터베이스는 이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DRAFT

포장 또는 포장 부품이 제외 대상임을 입증한 경우.

(G) ~~(C)~~ 본 문단을 시행함에 따라, 부서는 18980.14조에 명시된 요건과 제한을 준수하여, 해당 기관이 적절히 영업비밀로 식별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류해야 한다.

(삼) 섹션 하위항(af)에서 정의된 '재작성 가능' 또는 '재사용 가능' 포장
공공자원법 42041.

(사) "장치"에 사용되는 포장은 Title 21 제321조 (h)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전.

(오) 미국 법전 제21편 제321조 (g)항에 정의된 '약물'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미국 법전 제21편 제353조 (b)항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하다.

(육) 의료용 제품 포장. "의료제품"이란 (5)항에 정의된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 없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하나) 이들은 미국 법전 제21편 제321조 (i)항에 정의된 "화장품"도, 연방규정집 제21편 제701.20조에 정의된 "비누"도 아닙니다.

(둘) 이들은 연방 규정집 제21편 352.3조에 정의된 '자외선 차단제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약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섹션 42041 (e) (e) 2항 (A)항부터 (D)항의 목적상, 상품에 사용되거나 상품을 담는 데 사용되는 포장에는 1차, 2차, 3차 포장이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된 3차 포장은 해당 하위항에 명시된 상품이 포함되든 없든 간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목적, 물리적 특성의 범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이나 상품의 종류 등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재료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구성 요소 또는 구성 요소 그룹이 (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부서는 ( 3)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 위반 통지에 따른 최소 무게 또는 부피로 추정되는 요청, 또는 부서가 최소 무게 또는 부피로 관단한 기타 식별 사항에 관계없이 부품 및 구성 요소 그룹의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각 결정에 대해 5년마다 최대 빈도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공공자원법 제40401, 40502, 42060조.

참고: 공공자원법 40062, 42040, 42041, 41780.01, 42355.51조.

**18980.2.3조. 입증된 재활용률이 있는 특정 재료에 대한 면제**

(하나) 공공자원법 42041조 (e) 하위항 (2) 하위항 (H)에 따른 "적용 대상 물질" 정의 면제 목적을 위해:

(일)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품이 면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사람은 해당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기의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이) 해당 사람은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와 관계없이 18980.10조에 명시된 등록 요건에 따라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정 연도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와 전년도를 일부 포함하는 12개월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재활용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 적으로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처는 신청서가 포장재 또는 식품 서비스 용품이 공공자원법 42041조 (e) 하위항 (2) 하위항 (H)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경우 면제를 부여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 면제를 신청하는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품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름, 설명 및 기타 정보.

(이) 포장재 또는 식품 서비스 용품이 어떻게 어디서 수집, 가공,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예를 포함합니다:

(하나)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품,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자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이를 수집하는 기관, 프로그램, 장소 및 장소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면제 대상 포장 또는 식품 서비스 품목이 하위항 (a) 3항 (A)에 명시된 하위항 (A)에 명시된 대로 수집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품,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료가 가공되는 모든 수단과 이를 처리하는 기관들. 이러한 정보는 수집 후 어떤 물품도 도로변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분류되지 않은 자료와 혼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 포장재 또는 식품 서비스 용품이 포함된 책임 있는 최종 시장 목록,



DRAFT

신청서 제출일.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로, 2027년 이전 재활용률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면제는 제출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일곱)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를 갱신하려면, 생산자는 면제 만료 전에 갱신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8년 중 만료되는 면제의 경우, 갱신 요청은 2027년 이전 재활용률에만 근거할 수 있으나, 2027년 재활용률을 근거로 한 갱신 요청은 늦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될 경우, 갱신된 면제는 요청 제출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 신청 시 (f)항에 설명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만료됩니다. 갱신을 요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 신청인이 (b)항 (1) 및 (2)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유효하다고 믿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십시오. 인증은 부서~~에 편지 형식으로~~ 전자 제출 되어야 하며, 이메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통해 편지 제출을 통지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나 증거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거나, 신청서의 정보나 증거가 구식이거나, 변경된 상황으로 인해 이전 면제 허가 근거가 무효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갱신을 허가합니다. 생산자가 그러한 인증을 제공할 수 없다면, (b)항에 따른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하위 항목 (b)의 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부서는 초기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삼) 하위항 (e) 하위항 (H) (2) 항 (IV) 목적상 재활용률을 입증하는 가장 최신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DRAFT

**18980.2.4조. 특정 적용 대상 재료에 대한 면제**

(하나) 공공자원법 42060조 (a) 항 (a) 3항 또는 42060조 (a) 항 (4)항에 따라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PRO 또는 독립 생산자뿐입니다. 이러한 면제의 효과는 면제 대상 자료가 공공자원법 42050조 또는 42057조 (i)조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판매 제안, 수입 또는 유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면제는 일회용 포장재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기류의 보호 대상 자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PRO 수수료 보고 및 지불과 같은 생산자의 대상 자재 의무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둘) PRO 또는 섹션 18980.10의 하위항 (a)에 따라 부서에 등록 된 독립 생산자는 ~~하위항 (e)에 명시된 대로~~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조항에 따른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신청서만 심사합니다.

(일) PRO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그룹이 전부 또는 일부 준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처에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1)항과 달리, PRO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본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셋)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서에서 정한 형식과 방식에 따라~~ 신청서에는 -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AFT

(하나) 법 준수는 포장재나 식품 서비스 용품을 면제할 때보다 전반적인 건강 또는 안전 위험,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 위험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둘) 이 면제는 다른 생산자가 공공자원법 4205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승인 시, 면제는 2년간 유효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 국무부는 면제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면제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면제가 정당화되지 않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조항 (f) 2항 (E)항의 종료 조항에 따라, 단계적 계획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삼) 모든 면제는 하위 분할 조항(i)의 종료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여덟) 면제 갱신을 위해서는 PRO 또는 독립 생산자가 면제가 만료되기 120일에서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갱신이 승인될 경우, 면제는 면제가 만료되었을 날로부터 (g)항에 명시된 대로 추가로 2년 이상 유효합니다.

(일) 신청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와 증거가 정확하고 유효하여 면제의 원래 근거가 최신이고 충분하다면, PRO 또는 독립 생산자는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편지 형태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작성 통지를 통지한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나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갱신을 허가합니다

이 규정 18980.3.3조 (B)에서 네 번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공공자원법 42061조 (e)항에 따라 CMC 목록의 재활용 가능 결정 결과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부서는 이 규정 18980.3조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따르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은 심사를 위해 부서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 해당 연도에서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정보라면, 부서는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제한되어 다음 연도 1월 1일 이전에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해당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 CMC 목록에 대한 부서의 검토 또는 업데이트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이메일로 전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제출 가능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부서에서 규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일곱)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할구역 또는 하위 구역에 따른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CMC 목록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공공자원법 42060.5조의 (a) 해당 의무에 대해서는 CMC 목록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처가 발행일보다 늦은 효력을 가진 업데이트된 목록을 게시한 경우 해당 공표 후 1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권한: 공공자원법 제40401, 40502, 42060, 42061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41조, 42060.5조 및 42061조.

**18980.2.6조. 커버리지 재료 카테고리 목록 권고사항**

(하나) PRO, 참여 생산자 또는 독립 생산자는 18980.2.5조 (f)항에 따른 정보 제출에 적용되는 동일한 시간 제약 하에 CMC 목록에 대한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둘) 모든 추천서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부처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추천서 제출 포털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권고안은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권고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 권장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CMC 목록 중 어떤 요소가 해당 변경에 영향을 받는지 명시합니다.

(이) CMC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거될 것을 포함한 권고 변경의 영향을 받는 대상 물자 범주 식별.

(삼) CMC 목록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 생산자 책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이 공공자원법 42050조의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도록 계획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의 일환으로, PRO는 참여 생산자 및 친환경 조절 공식에 대한 수수료 일정 권고 변경이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 추천을 지지하는 추가 생산자 목록과 각 생산자 연락처 정보.

(오) 권고된 변경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에는 기존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데이터, 인프라 변경, 책임 있는 최종 시장의 승인률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RAFT

공공자원법 42061조 (a) 하위항 (a) 3항 (B)항에 명시된 재활용 가능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 이 조항에 따라 재활용 대상으로 간주되려면, 공공자원법 42355.51조 (d) (d) 하위항 (ii) 또는 (iii) 항에 따라 물질적 특성 연구 업데이트 또는 추가 정보를 발표할 때 먼저 적용 대상 물질 범주를 식별해야 합니다. 부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고 예비 결론 내릴 때에만 적용 대상 물품 범주를 예비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 재료 특성화 연구나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업데이트는 적용 대상 물질 범주 내 자료의 수집 및 분류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 이러한 증가는 다음 필수 물질 특성화 연구 업데이트 전에 공공자원법 42355.51조 하위항(d) 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 부서가 (b)항에 따라 적용 대상 물질 범주를 예비적으로 식별할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웹사이트 및 .에 게시해야 ~~. 합니다. 부서는 공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30일 간 공공 검토 및 의견 제출 ~~, 관련 정보 및 증거 제출을 허용~~ 합니다. 부서는 ~~해당 자료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다루는 범위 내에서만~~ 의견과 제출물을 고려합니다:

(일) 적용 대상 물질 범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

DRAFT

생산자는 누구든지 주에서 판매, 판매, 수입 또는 유통을 의미합니다.

(셋)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자가 된 법인은 생산자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섹션 18980.10의 하위항 (a)에 따라 부서에 등록하고, 참여 생산자가 되거나 섹션 18980.5.1에 따라 독립 생산자가 되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넷) 본 섹션의 하위 (b)에 따라 승인된 PRO의 참여를 신청하는 모든 생산자는 신청 시점에 2023년 달력 연도의 해당 생산자 공급 데이터를 PRO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부 분류에서 "공급 데이터"는 18980.10.2조에 설명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공공자원법 제40401, 40502, 42060조. 참고: 공공자원법 제42051조.

**18980.5.1조. 독립 생산자 준수 신청서**

(하나) PRO에 참여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려는 생산자는 18980.5조 (a)항에 따라 이미 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18980.10조 (a)항에 따라 부에 등록하고 개인 준수 신청서를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 생산자가 판매, 판매, 수입 또는 주 내로 유통하는 보장 자재의 종류.

공공자원법 42060조는 18980.5조 (a)항에 따라 이미 부과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8980.10조 (a)항에 따라 부에 등록 하고 이메일로 부처 에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 최근 달력에서 생산자의 주 내 총매출 기록
연간 수익은 100만 달러(1,000,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 예를 들어 소매 또는 도매 활동과 같은 사업 활동;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혹은 둘 다에서 사업을 진행하든;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제품의 성격, 그리고 주 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획득하는 정도와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또는 상표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둘) 부처는 신청서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 대상 물자 유형 또는 적용 대상 물자 범주가 공공자원법 42050조 요건을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승인한다. 부서가 그러한 판단이 정당한지 평가할 충분한 정보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생산자는 면제 허가의 잠재적 효과를 추가 평가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와 증거를 신청서에 보완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면제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합니다.

(셋) 면제 갱신을 위해 소규모 생산자는 만료일 120일에서 90일 사이에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부서는 초기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해야 합니다

DRAFT

특별함. 생산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면 참여자로 인정되며, 공공자원법 42051조 (b)항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삼) 생산자가 정당한 원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생산자는 섹션 42051 (b)의 목적상 PRO 참여자로 간주됩니다.

(사) (2)항과는 별개로, 그 사유가 이전 연도에 제작자를 해고하거나 거부한 것과 동일한 행위나 상황에 근거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치유할 기회는 요구되지 않는다.

권한: 공공자원법 40401, 40502, 42060, 42063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51조 및 42051.1조.

**18980.6.1조. 생산자 책임 계획 제출**

(하나)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자원법 42051조 (a)항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PRO 는 2026년 4월 1일 이전에 [~~행정범청에서 국무장관 제출일 또는 2026년 4월 1일 중 늦은~~ 날짜]에 작성하여 공공자원법 42051.2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생산자 책임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 하위항 (a)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자원법 42051조 (a)항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PRO 는 [행정법국에 제출일, 국무장관에게 제출일일 또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생산자 책임 계획을 자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DRAFT

어느 쪽이 더 늦은지 상관없습니다]~~2026년 4월 1~~일, 하지만 2026년 6월 15일 이전에 다음 조건이 따른다:

(일) PRO는 분할 (1)항에 명시된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b) 공공자원법 42051.2조의 조항. PRO는 대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공공자원법 42051.2조 (b) 항에 따라 수정된 계획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공공자원법 42051.2조 (b) 하위항 (2)항에 따라 계획을 PRO로부터 받은 후 75일 이내에 계획의 준수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 부서가 승인한 후임자 또는 추가 PRO는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공자원법 42051.2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생산자 책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넷) ~~-~~ PRO ~~-~~ 가 공공자원법 42051.2조 (a)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생산자 책임 계획을 ~~제출~~ 할 때, PRO는 최소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획을 게시 ~~하여 대중에게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PRO가 (e)항에 설명한 검토를 받으려면,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공개 의견은 게시 후 60일 이내에 PRO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섯) 공공자원법 42051.2조 (b) (1)항에 요구되는 생산자 책임 계획에는 자문위원회 및 대중으로부터 받은 모든 의견 요약과 의견에 대한 수정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PRO는 승인된 계획이 공공자원법 42051.2조 (c)에 따라 게시될 때까지 최소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획을 게시하여 대중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DRAFT

조건부 승인 후 12개월 이내.

(이) 각 승인 조건에 관한 상태 업데이트와 그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

(넷) 조건부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은 종료되며, PRO는 법 및 이 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섯) 부서가 승인한 계획은 승인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권한: 공공자원법 40401, 40502, 42060, 42063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51.2, 42060, 42063조.

**섹션 18980.6.3. 업데이트된 생산자 책임 계획 검토**

(하나) PRO는 생산자 책임 계획 만료일 최소 180일 전에 공공자원법 42051.2조 (d) 항 (2)에 요구되는 수정된 계획안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 ~~PRO~~ 가 공공자원법 42051.2조 (d) (d) 항에 따라 자 ~~-~~ 문위원회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생산자 ~~-~~ 책임 계획을 제출할 때, PRO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제안된 업데이트된 계획을 공개 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PRO가 제안된 수정 계획을 제출한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는 PRO에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c)에 명시된 PRO의 심사를 받으려면,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공개 의견은 해당 제출 후 60일 이내에 PRO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 문서는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이 문서 제출을 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일은 부서가 접수한 날짜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 부서는 각 문서에 적용되는 18980.6.1, 18980.6.3, 18980.6.4, 18980.6.5, 18980.8, 18980.8.8, 18980.9.1 절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가 참조된 조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문서를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둘)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정확하며, 하위조항(a)의 3항에 명시된 대로 인증된 문서는 옳습니다.

(삼) 문서는 위증 처벌 하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문서에 서명하고 다음과 같은 인증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에,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가 내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둘) 제출물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에 따라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문서이며, 해당 공개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서는 PRO가 적절히 영업비밀로 식별한 기록을 제14조에 명시된 요건과 제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에 명시된 영업비밀 포함 및 공개 불가라고 주장된 특정 내용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PRO는 계획 또는 기타 일부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문서들 중 부서가 비-



DRAFT

업무 시간 정보는 부서나 기타 정당하게 승인된 규제 기관에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된 재료의 무게는 18980.3.2조 (b) 항 (2)항에 따라 결정된다.

(일곱) 이 조항의 목적상, 폐기된 물질의 무게는 18980.3.2조 (b) 항 (3)항에 따라 결정된다.

권한: 공공자원법 제40401조, 40502조, 42057조 및 42060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51.1, 42052, 42054조.

**제7조: 독립 생산자 요건 18980.7조. 독립 프로듀서 계획 제출**

(하나) 섹션 18980.5.1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독립 생산자는 6개월 이내에 공공자원법 섹션 42051.2에 따라 생산자 책임 계획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 ~~독립 생산~~ ~~자가 공공자원법 42051.2조 (a)항에 따라~~ 자 문위원회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생산자 책임 계획을 제출한 후, 독립 생산자는 ~~최소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획을 게시~~하여 대중에게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c)에 명시된 독립 제작자가 검토하려면,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공개 의견을 게시 후 60일 이내에 독립 제작자가 접수해야 합니다.

(셋) (1)항에 요구되는 생산자 책임 계획

참고: 공공자원법 42051, 42051.2, 42063조.

**섹션 18980.7.2. 업데이트된 독립 프로듀서 계획 검토**

(하나) 독립 생산자는 생산자 책임 계획 만료일 최소 180일 전에 공공자원법 42051.2조 (d) 하위항 (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제안된 수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 -독립 생산 자가 공공자원법 42051.2조 (d) 하위항 (2) - 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생산자 책임 계획을 제출 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요청 할 때, 독립 생산자는 제안된 업데이트된 계획을 공개하여 검토 및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최소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획을 게시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독립 생산자가 제안된 수정 계획을 제출한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는 독립 생산자에게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c)에 명시된 독립 제작자가 검토하려면,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공개 의견을 게시 후 60일 이내에 독립 제작자가 접수해야 합니다.

(셋)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늦어도 120일 이내에 독립 생산자는 공공자원법 42051.2조 (d) 하위항 (2)항에 요구되는 업데이트된 생산자 책임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원회 및 대중으로부터 받은 모든 의견 요약을 포함하고 수정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독립 프로듀서가 요약한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독립 생산자는 승인된 업데이트된 계획이 게시될 때까지 최소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획을 게시하여 공공 검토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넷) 업데이트된 계획이 다음 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DRAFT

프로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권한: 공공자원법 제40401조, 40502조, 42060조, 42063조 및 42057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51조 및 42051.3조.

**섹션 18980.7.5. 독립 제작자 문서 제출**

(하나) 독립 생산자가 부서에 제출하는 생산자 책임 계획, 업데이트된 생산자 책임 계획, 계획 수정, 연례 보고서 또는 이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 문서는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이 문서 제출을 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일은 부서가 접수한 날짜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 부서는 각 문서에 적용되는 18980.7, 18980.7.2, 18980.7.3, 18980.7.4, 18980.8, 18980.9.1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가 참조된 조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문서를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둘)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정확하며 하위 항목 (a)(3)에 명시된 대로 인증된 문서는 정확합니다.

(삼) 문서는 위증 처벌 하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n



DRAFT

**제9조: 원원 감소 기준선 보고서 및 연례 보고서 섹션 18980.9. 원원 감소 기준선 보고서**

(하나)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보고 기관은 출처 감소 기준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 감소 기준선 보고서는 이메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지를 했다면, 보고서 제출은 포털이 제공되며, 보고서는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 보고서에는 2023년 연도에 생산된 플라스틱 커버 재료의 무게 및 부품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덮개재의 무게는 18980.1조 (a)항 (15)항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둘) PRO는 각 참여 생산자가 (a)항에서 명시한 금액을 분해해야 합니다.

(셋)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공자원법 42057조 (b)항에 따른 출처 감소 기준선을 2026년 11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권한: 공공자원법 제40401조, 40502조, 42041조, 42057조 및 42060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41, 42051, 42052, 42057 조항.

**18980.9.1조. 연례 보고서**

(하나) 이 조항 18980.6.5조 및 (b)항에 따라, 모든 연례 보고서에는 공공자원법 42051.3조 (a)항 (2) 및 (3)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 독립 생산자 연례 보고서의 필수 요소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 연례 보고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PRO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독립 생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공자원법 42051.3조 (a) 항 (a) 3항의 수수료 표 (A) 하위항 및 42051.3조 (a) 항 (a) 항 (B)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독립 프로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 공공자원법 42057조 하위항 (a) (a) 항 (2)항에 따른 대체 준수 공식에 따라 달성된 무게별 소스 감소 비율은 PRO 계획의 일부로 부서가 승인한 것입니다.

(삼) 연례 보고서의 1단계, 18980.6.5절에 설명된 대로, 18980.8.2(b)(2) 및 18980.8.2(c)조에 따라 요구되는 폐쇄 및 이전 계획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섯) 공공자원법 42051.3조 (a)항에 따라 제출된 연례보고서 2단계 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는 연례 보고서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일) 연례 보고서가 완전하다고 판단된 후, 부서는 공공자원법 42051.3조 (b) (2)항부터 (5)항에 명시된 법 및 본 조항의 적용 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공공자원법 제40401, 40502, 42060조.

참고: 공공자원법 42051, 42051.3, 42053, 42057, 42080, 42081조.

**제10조: 등록 및 데이터 보고 요건 18980.10조. 등록 및 주소 유지**

(하나) 18980.2.3, 18980.2.4, 또는 18980.5.2조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모든 생산 자는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등록 정보와 요청은

DRAFT

부서 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부서를 운영합니다. 부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공공자원법 42041조 (w)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든 대상의 생산자가 아니라면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 등록을 위해 생산자는 최소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 제작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입니다

(둘) 법인명 (가상의 사업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셋) 생산자가 사업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명(즉, 가상의 이름) 사업명 또는 "DBA" 이름)

(넷)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가 없는 기록 수입업자의 경우, 세관 지정 수입인 번호(CBP 할당 번호라고도 함))

(다섯) 사업장 우편 주소

(여섯) 주요 사업장 주소(물리적 주소; 우체국 사서함이 아니어야 함)

(일곱) 비즈니스 전화번호

(여덟)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이) PRO는 보고 기관이 되기로 선택한 참여 생산자를 제외한 각 참여 생산자를 대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삼) 제작자는 부서에 제출된 연락처 정보가 최신이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 부서의 요청 시 제작자는 정보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DRAFT

부서에 문의하여 14일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세요.

(삼) 부서가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의 오류를 서면으로 보고기관에 통지하면, 보고 기관은 14일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 보고 기관은 오류 해결이 14일 이내에 완료될 수 없는 이유를 부서에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 참여 생산자는 PRO에게 보고되었거나 보고할 예정인 활동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본 장의 보고 의무에 관한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PRO는 그러한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 PRO의 초기 보고서는 18980.6.1조 (a) 또는 (b) 하위항에 따라 제출될 때 생산자 책임 계획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서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하거나 ~~부서가 마련한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 전년도 관련 보고서 데이터. 보고 기관은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된 대상 물질 카테고리 목록을 보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넷) 18980.10조 (b) (1) 또는 18980.10조 (c) 항에 따라 보고 시스템 등록 비활성화를 요청한 생산자는 생산자의 활동이 변경된 날짜 이전 부분 연 동안 수행한 활동에 대해 본장의 보고 요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DRAFT

**섹션 18980.11.1. 지방 관할 구역 및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연장 또는 면제**

(하나) 공공자원법 42060.5조 (b)항에 따라, 지방 관할구역 또는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자원법 42060.5조 (a) 항의 요건 연장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해당 요건 준수 불이행을 주장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 이 조항의 목적상 "면제"는 "연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장은 면제와 다르지만, 면제는 승인 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청자를 2년간 해당 요건에서 면제하는 반면, 연장은 요건이 발효되기 전에 허용되어 적용 기간이 원래 발효될 예정보다 2년이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 면제를 요청하는 지역 관할구역 또는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는 ~~이메일로~~ 부처에 전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이용 통지를 한 경우, 대신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 신청서를 대신해 제출된 각 기관에 대해 다음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하나) 법인의 이름, 우편 주소, 그리고 물리적 주소입니다.

(둘) 요청을 제출한 개인의 이름,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셋) 다를 경우, 면제와 관련된 모든 소통을 부서가 전달해야 할 개인의 이름,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일) 하위항목 (c) 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거나 공공자원법 42060.5조 (a) 하위조항 준수의 실질적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하위조항 (c) 및 (d)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역 관할구역 또는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가 원래 신청서에 명시된 지역 조건, 상황 및 도전 과제가 변하지 않았고 계속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경우, 새로운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단, 지방 관할구역이나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하나) 모든 PRO와 독립 생산자에게 원래 신청서에 명시된 동일한 근거로 연장 또는 면제 갱신을 요청할 의사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둘) (d)항에 설명된 절차를 완료하고, 접수된 의견을 고려할 때 원본 신청서의 내용이 여전히 정확하고 비현실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십시오.

(셋) 지역 관할 구역 또는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가 원본 신청서가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전자 이메일로 부서에 제출하는 서한으로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작성 통지를 통지한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한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증명하며, 신청서에 명시된 상황이 42060.5조 준수를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한에는 필요한 경우 하위 분할 (c) 1항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한에는 접수된 의견(있다면)과 해당 의견이 신청서 업데이트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거나 동봉되어야 합니다.

(넷) 지역 관할구역이나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가 원본을 확인한다면



DRAFT

요구사항.

(둘) 검증 또는 인증 프로그램, 시장 조사, 옹호, 과학 또는 정책 연구, 과학 시험, 산업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 인증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법인과 거래를 하며, 해당 사업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없이 자회사나 모회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이 하위항에서 명시된 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구매와 관련된 추가 계약 또는 기타 관계 없이 이 하위항의 목적상 어떠한 사람과의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 제3자 인증 기관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승인 또는 이전 승인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포털 제출 가능 통지를 한 경우, 다음 서류는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전자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모든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승인 또는 갱신이 승인됩니다.

(일) 연락처 정보.

(이) ISO/IEC 17065:2012 인증 문서.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을 보유한 기관을 식별하는 인증 기관의 디렉터리는 충분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삼)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술서로, 해당 기관이 (b)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입니다.

(넷) 부서가 제3자 인증 기관에 대한 승인은 부서가 해당 기관을 승인한 달력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달력연도 1월 1일, 또는 해당 기관의 인증이 만료되거나 무효가 되는 날부터 만료됩니다.

DRAFT